「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10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올림픽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로 갖춰진 국제회의 인프라 활용과 올림픽 유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평창군 주도의 마이스(MICE) 기반을 구축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군수의 책무(안 제3조)

3)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4)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안 제5조)

5)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안 제6조)

6)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7)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8조～제12조)

8)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9) 시행규칙(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주도의 마이스(MICE) 기반을 구축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 기본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마이스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필요 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우리 군의 국제회의 인프라와 올림픽 유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지식기반 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는 제정의 취지는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 발전법」을 비롯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창군의 마이스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